



Q 랙크식 창고에 관한 정확한 정의와, 랙크식 창고에 헤드를 설치할 경우 몇 m마다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랙크식 창고는 반재(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까지의 높이가 10m를 넘는 것으로, 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 등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합니다. 즉, 바닥으로부터 창고의 처마까지의 높이가 10m 이상이며 운반장치를 갖춘 창고를 의미합니다.

랙크식 창고의 헤드배치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랙크 높이 4m 이하마다 설치하고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경우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Q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습식 외 설비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파우려가 없는 실내에 프리액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하향식 헤드를 취부할 경우에도 헤드별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드라이 펜던트 헤드의 경우 헤드 자체에 배수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준비작동식이나 건식설비는 일반적으로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로서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가 오동작 등으로 인하여 개방되면, 하향식 헤드의 경우는 가지관에서 헤드까지의 접속부위에 충전된 소화수로 인하여 동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향식 헤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드라이 펜던트 헤드의 경우는 유수검지장치가 오동작되어도 헤드에 소화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향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내이고 동파의 우려가 없다면 준비작동식설비에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Q 비상방송스피커를 벽부형으로 기둥에 설치 시, 전선은 FR-3케이블, 관은 PVC몰드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수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NFSC102)의 별표 1의 2(내열배선)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A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NFSC102)의 별표 1의 2(내열배선)에서 사용전선의 종류가 내열전선(FR-3 등)인 경우 내열배선으로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공사는 한 마디로 전선관이나 덕트 및 몰드를 사용하지 않고 케이블 그 자체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PVC몰드관에 의해 보호할 경우, 케이블(FR-3) 자체 내열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 보험 가입 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상품을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험에서 중복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생명보험회사의 A보험, B손해보험회사의 B보험(실손의료비 담보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중복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C손해보험회사의 C보험(실손의료비 담보가 포함된 보험), D손해보험회사의 D보험(실손의료비 담보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손의료비 담보(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만이 비례보상이 되며 그 이외의 사망, 후유장애,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보상의 담보들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미흡한 보장 내용이 있는지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Q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건물주로 하여 공장 임대인이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임차인은 건물화재보험료를 임차면적에 비례하여 관리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장에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차자가 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임차인이 건물 화재보험료를 분담하였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여,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임차인이 보험료를 분담하였다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물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의 현재 가치(시가)로 보험가입을 하였는지 확인하셔야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옆 건물의 화재(현재 화재원인 조사 중)로 인하여, 임대사용 중인 건물 밖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해야 할 형편입니다. 옆 건물에서는 본인 소유 물품만 수리를 했고(보험 가입), 제 건물주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건물 외부 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만 가입하였을 경우 에어컨 실외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실화책임자가 실화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